

장 한 용

공업진흥청 안전관리과장

1. CSA란?
2. CSA의 組織
3. CSA規格의 制定과 改正
4. CSA의 刊行物
5. CSA規格의 分類樣式
6. CSA 規格目錄의 사용방법과 規格
입수방법
7. 製品의 認證制度
8. CSA Mark의 취급
9. CSA Label의 취급
10. CSA Special Acceptance Service
(특별수락제도)
11. CSA 認證部(Certification Division)
12. 우리나라에서 CSA認證을 받으려면
13. CSA認證의 취소
14. CSA/NRTL인증

1. CSA란?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 캐나다規格協會)는 獨立된 非營利 民間團體로서, 1919년 聯邦憲法에 의해서 設立되었다.

設立目的은 캐나다에 의해서 국가적인 Base로 쓸 수 있는 임의적인 形態의 規格을 만들기 위한 System을 만들기 위한 System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CSA의 基本的인 역할에 대해서 CSA規約은 “캐나다의 規格 및 認證 Service를 캐나다 國民政府, 產業界의 便益을 위해 提供”하는 것을 明示하고 있다.

1.1 CSA의 沿革

CSA의 역사는 第一次 世界大戰當時로 거슬러 올라간다. 第一次 世界大戰中 英國의 貿易廳 및 英國 工業規格委員會는 캐나다 政府에 대해 規格委員會를 創設하고 第一次 世界大戰으로의 貢獻을 要請하였다. 이것을 받은 聯邦政府의 자문에 응해서 公的機關과 民間代表間에 會議가 알려 1919년에 Canada工業規格協會 (CESA = Canadian Engineering Standards Association)를 設立하였다.

CESA는 會社法에 따라 株式 發行을 하지 않는 法人으로써 발족하였지만 이것은 官民一體의 協同作業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고 當初는 聯邦政府와 產業界의 財政的 지원에 의해서 運營이 되어져 왔다.

1927년에 “캐나다 電氣要綱 第I部”를 發行하였고 1930년에는 “캐나다 電氣要綱 第II部”로써 交流를 電源으로 하는 Radio受信機의 規格草案 作成作業을 개시하였다.

그 후 1940년에는 CESA 認證部가 생겨 캐나다

電氣要綱에 의해서 認證試驗이 開始되었지만 當時 CESA는 시험소를 갖지 못해 Ontario 電力委員會가 CESA를 대신해서 試驗을 해왔다.

1944년 名稱을 현재의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으로 변경하여 CSA Mark의 등록(認證 Service)을 시작하였다.

또 1947년에는 ISO 및 IEC Member로 되었다.

1950년, CSA 最初의 試驗所를 완성하였고 承認試驗과 檢査業務를 Ontario 電力委員會로부터 移管받았다.

1.2 캐나다에 있어서 最初이며 最大 規格作成 機關

現在 CSA規格 List에는 約 1000여개의 發行規格이 List되어 있고 그 중의 1/3에 대해서 認證業務에 活用되고 있다.

CSA의 最初의 規格은 Engineering部門에서 만들었으며 그 후 해가 지남에 따라서 여러가지 分野를 Cover하도록 되어져 왔다.

電氣製品과 그 設置에 關한 規格과 要綱외에 健康管理技術 關連製品, 工業品化된 建築物, 정보처리, 鉛管製品, Sports, Recreation用具, Pipeline, 林業製品, 環境보호에서 부터 원자력 設備에 이르기까지의 規格이 있다.

CSA는 현재에도 外部로부터 財政的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않으며(政府와의 契約에 의한 業務는 제외). 캐나다에 있어서 最初이며 최대의 規格作成機關으로써 소기의 目的으로 어떤 제품의 標準化의 必要作業을 행하는 非營利 機關으로써의 活動을 하고 있다. CSA의 資金은 주로 刊行規格의 販賣收入과 支持會員(約 2,200名)의 會費收入, 특별기부금, 認證料 等이다.

1.3 CSA와 UL

캐나다는 美國과 周波數 및 電壓이 같으므로 電氣 Maker도 거의 같으나(GE, RCA 그 외에도 여러 제조기업이 兩國에서 生産하고 있다) CSA와 UL規格은 같지 않다.

또 CSA規格이 그 보다 25年 전에 創立된 UL을 Model로 해서 만든 것은 사실이나, 言語, 습관 혹은 기후, 風土도 유사함을 생각하면 이것은 意外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아주 같은 部分도 規格의 一部에는 있지만 거의는 다른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原因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하나는 兩機關일지라도 各各의 獨自性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또 수많은 技術委員會를 갖고 있으며 그 委員會의 권고, 결정을 받고 規格作成, 改正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兩機關의 委員會끼리 밀접하게 曄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도 그 하나의 原因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兩者의 성격을 비교하면 CSA는 州政府, 中央政府로의 연계가 UL에 비교해서 강하고 政府機關의 의견도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UL은 民間機關으로써 業界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차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以前에 비해 兩者의 교류가 밀접하게 되었고 독자노선을 걷는 것보다도 調和가 可能的한 것은 調和해서 이행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今後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努力이 이루어져 지고 있다.

“CSA와 UL은 어느 쪽이 엄격한가”-어느 쪽이 엄격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어떤 면에서는 CSA가 엄격하기도 하고 또는 그 반대도 있다. 이것은 마치 기본적인 생각과 方法에 차이가 있는 部分이 많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 점을 고려해서 굳이 一般의으로 말하면 Radio,

Television等 가정용 電子器機는 UL쪽이 試驗項目이 많다. 어떤 의미로는 엄격하다고 말할 수 있다. (試驗手數料도 UL이 비싼 경우가 많다)

또 CSA는 約 700名의 職員이 있고 캐나다 全國의 6個 試驗 및 事業所에서 일에 종사하고 있다. 全體 豫算規模는 約 \$3,000萬로 世界 Base로 보면 CSA는 매년 신규 認證申請 2,000件 이상을 처리하고 世界 41個國에 걸쳐서 2,600件 이상의 工場檢査를 하고 있다.

1.4 CSA 본부와 4개의 地域 事務所

CSA본부는 Ontario州 Rexdale事務所(1954년에 移轉)에 있다. 事務所에는 CSA의 2개 主要部門, 즉 規格部와 認證部가 있다. 그 외 CSA執行부와 財務部等 管理部門 事務所도 Rexdale에 있다. 본부 사무소에는 約 500명 이상의 職員이 있고 規格部の 직원은 規格開發을 맡은 委員會의 5,000명 이상의 회원과 協力하고 있으며 認證部는 많은 種類가 계속 開發되는 電子, 鉛管, 機械裝置等의 試驗을 실시하고 있다. 試驗의 管轄구역은 미국 中部와 東部 및 Rexdale를 중심으로 하는 Ontario州가 대상이다. 본부는 Toronto市 郊外에 있으며 北西쪽에 위치하고 Toronto공항에서 車로 5~10分(5~10km)되는 곳에 있다.

1) 太平洋地域 事務所

1968년 現在의 British Columbia州의 Rechimond로 移轉하여 1981년에 중축하였다. 사무소는 다른 캐나다 국내의 地域事務所와 같으며 CSA認證部門의 一部으로써 캐나다 및 미국 西部地域에서 申請되는 製品의 試驗所 機能과 이들 地域의 工場檢査도 하고 있다. 이 사무소는 CSA의 벤쿠우버 消費者 諮問 Panel운영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CSA의 정책에 의하여 우리나라를 포함 극동지역국의 총괄업무를 1990년도부터 개시하고 있다.

2) 西部地域 事務所

1970년에 Alberta州 에드민턴에서 開設되었으며 Service구역은 Alberta州, 北西準州, Yukon州 및 Saskatchewan州 一部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移動式住宅과 Recreation用 車輛의 試驗檢査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3) Quebec 및 大西洋 沿岸地域 事務所

地域事務所中 제일 먼저 설치되었으며 30여년 전에 Montreal市에 開設되었다가 1964年 현재의 Montreal市 郊外 포인트쿠르아로 이전하였다. 여기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規格을 불어로 번역을 擔當하는 規格部門이 있다.

Service 地域은 Quebec州와 캐나다 大西洋 沿岸州밖에 없으며 美國 東部に 대해서 認證과 檢査業務를 하고 있다. CSA의 Montreal 消費者諮問 Panel의 사무국 역할도 하고 있다.

2. CSA의 組織

2.1 會員과 特別會員

CSA에는 各 規格委員會의 委員을 맡은 사람이 約 5,000名 있으며 이 사람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CSA會員이다. 또 財政的으로 規格開發을 지원하는 個人, 法人, 團體 및 政府의 代行機關은 年會費를 지불하는 것에 따라 “特別會員”으로 되고 있다.

CSA運營資金은 주로 刊行規格의 판매수입과 約 2,200名에 이르는 特別會員의 會費收入 및 특별기금, 契約이나 認證料等이다.

CS. 83의 特別會員으로 되기 위해서는 年間 \$300의 會費를 지불해야 한다.

特別會員이 되면 다음과 같은 一連의 특별한 Service가 提供된다.

- ① 規格의 20% 割引

- ② 特別한 情報 Center의 利用

- ③ 專用 直通電話의 利用

- ④ 特定の 規格 Project(利割關係가 있는)에 관해서 그 費用分擔의 權利를 가질 수가 있다.

아직 特別會員은 넓은 범위의 利害關係者로써 그 List에는 Consulting會社, 병원, 대기업의 團體에 이르는 各양각색의 기업이 그 部門마다 別個의 會員으로 되고 있다.

2.2 CSA의 組織(그림 2)

우선 組織圖(그림 2)의 Top에는 會員들이 構成되어 있다. 이것은 CSA會長, 理事長, 혹은 다른 임원도 모두가 會員들의 投票에 의해서 선출되고 規格의 作成이나 認證業務의 運營도 會員들의 의견에 의해 결정된다.

1) 임원회, 회장, 이사장

다음은 아래에 임원회, 회장, 이사장이 있다.

회장은 CSA 內部人이 아니고 業界로부터 선출되고 政府와의 절충등의 責任을 맡고 CSA에는 常勤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사장은 常勤으로 政府에 신고나 절충 업무를 행한다.

임원회는 各 州에서부터 業界, 學界, 政府機關의 대표로 構成되며 CSA內部에서의 參加는 한사람 뿐이다. 더구나 이것은 執行委員會도 마찬가지이며 임원회와 執行委員會의 양쪽 Member를 겸하는 임원도 있다.

임원회의 下部組織에서는 規格政策部會, 品質管理政策部會, 캐나다 木林規格部會, 캐나다 鎔接部會, 認證部會, 諮問 혹은 審議機關이 있고 各部會의 의장은 임원회에 대해 직접 보고는 하지 않는다.

2) 두개의 現業部門: 規格部와 認證部

보통 CSA에서 申請을 擔當하여 關係하는 部門

은 거의 認證部이고 다른 部門은 關係가 없다. 신청접수, 인증시험, 공장검사등의 업무는 認證部에서 하고 있다.

認證部 以外の 部門과의 關係는 請求書의 發行이나 Label, 規格의 販賣에 대해서 財務管理와 규격의 발행이나 CSA Information, Up Data, CSA特別會員 加入 等으로 規格部와 접촉을 갖는 정도이다.

CSA의 現業部分은 크게 規格部와 認證部 두개로 나눌 수가 있다.

(a) 規格部; 規格部에서는 各 分野의 約 1,000에 이르는 委員會의 손을 거쳐 常時 開發中인 規格에 관해서 約 6,000여명의 사람이 종사하고 있다. 規格部委員會(Board)의 의장을 통해서 이사회에 이어지고 있고 CSA規格은 이 規格部委員會에 있어서 時間과 知識을 제공하는 生産者, 政府를 대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다.

委員會의 책임은 정세변화에 따라 늘 規格을 개발하고, Monitor하고 갱신에 오는 것이다. 組織體로써의 CSA는 이처럼 관심이 있는 당사자가 함께 작업이 可能하게 管理體系를 배려해 오고 委員會에 있어서 그 中の 특정 Group만이 지배력을 갖는 것이 없도록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新規格의 開發에 있어서 CSA는 委員會의 사무국을 맡고 있다. 이때 認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CSA認證部の 대표가 委員會에 출석하여 기술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다.

(b) 認證部: 認證委員會는 CSA認證部の 方針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商工業界에 認證事業의 情報를 주어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 變更에 대해서 조언을 준다.

② 計劃이나 方針에 대해서 工業 Group과 협조해 認證에 대한 이들 Group의 要望事項에 合致

하도록 하는 것을 保證한다.

③ 消費者 Group, 檢査規格當局, 規格作成機關 및 제조, 유통업자간에 圓滑한 作業關係를 촉진하고 유지한다.

④ 試驗과 認證에 대한 現在 및 장래에 올 必要性을 調査하고 이들의 必要性에 合致하도록 勸奨한다. 이 경우 이 必要性은 個人的인 要望에 따른 새로운 認證事業이나 設備調査인 것도 있다.

실제로 이같은 形態로 電氣製品 以外の 製品에서도 예를 들면 鉛管製品이나 오토마이의 Helmet, 안전화 또는 그 밖의 신발, 건설用的 안전모 등 가지각색인 제품이 認證을 강제로 받도록 하고 있다.

⑤ 認證수속과 기술에 대해서 기술, 경제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며 申請者에게 보다 빠른 Service를 제공한다.

以上이 CSA認證部の 사업수행에 대한 指針이다.

2.3 CSA 諮問委員會

CSA 諮問委員會는 캐나다 全國의 法規制를 권고하고 실시하는 권한을 갖고 各州의 各自治當局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국가의 調査委員會라든지 聯邦政府의 代表者로써 各分野의 전문가가 參加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諮問委員會는 各各의 専門분야에 있어서 安全과 性能에 관해 國家要綱으로써 받아들여지는 方向에서 作業을 한다.

CSA에는 다음 5個의 諮問委員會가 있다.

- 1) CSA의 電氣安全에 관한 諮問委員會
- 2) CSA의 火災安全에 관한 諮問委員會
- 3) CSA의 鉛管에 관한 諮問委員會
- 4) CSA의 勞動安全衛生에 관한 諮問委員會
- 5) CSA의 健康管理科學에 관한 諮問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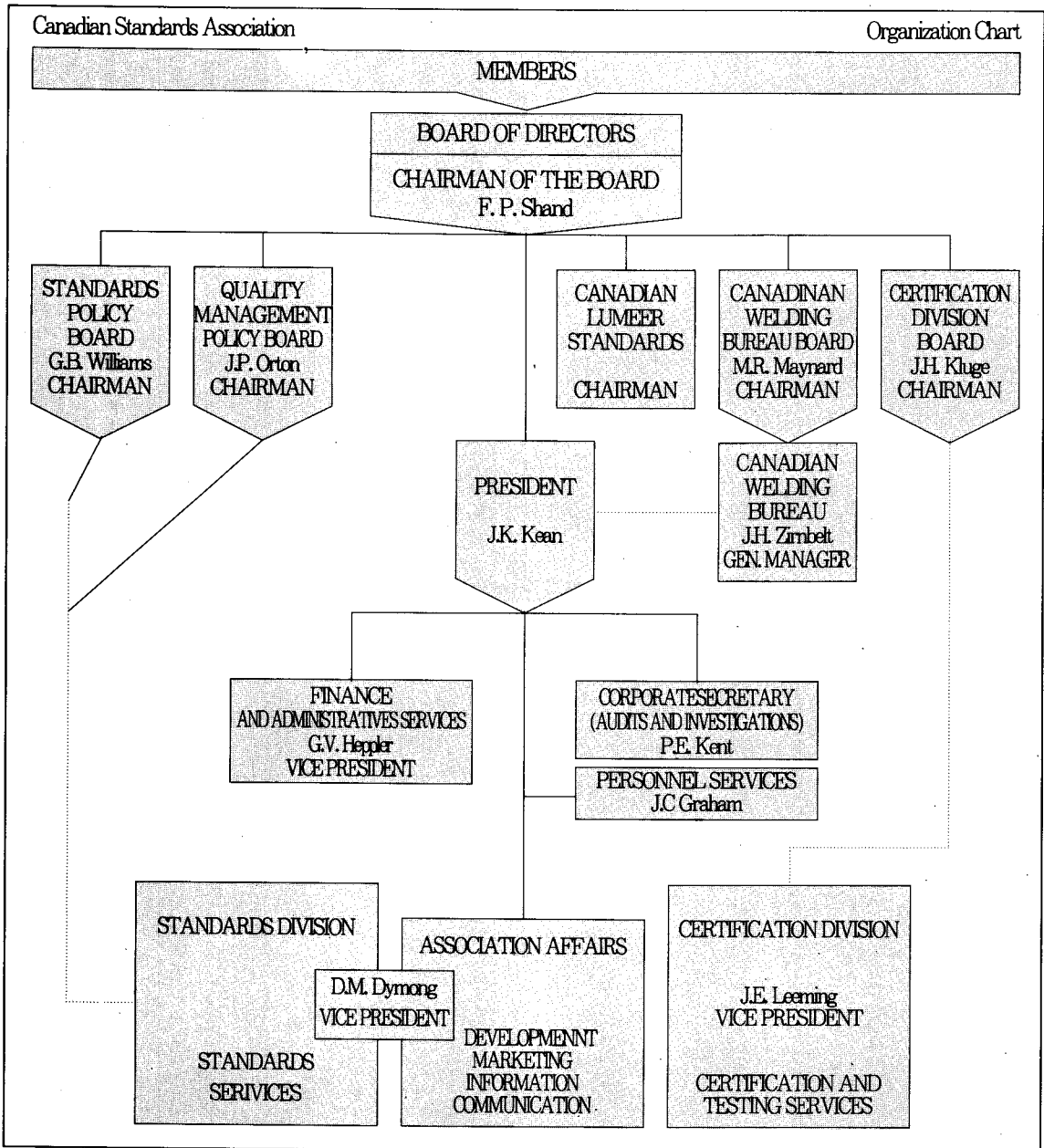
諮問委員會의 커다란 機能은 다음과 같다.

- 1) 要綱 혹은 規格, 認證上의 問題 및 국가 Base에서의 검사에 대해서 托의하는 Forum 을 만든다.
- 2) CSA에 대해 검사나 認證 혹은 이들에 關係 要綱, 基準 및 手속에 대해서 Advice를 한다.
- 3) 여러가지인 法規制에 關係여 CSA에 정보를 轉한다.
- 4) 機械, 材料 또는 Service와 전반적인 認證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認證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投票를 한다.



註: • 표는 CSA의 事務所 및 試驗所所在地

그림 1. Canada지도



※ CSA 조직도 人名은 内部事情에 따라 變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 2. CSA 조직도

3. CSA 規格의 制定과 改正

3.1 規格의 政策委員會

CSA의 規格開發은 항상 자주적인 Consensus下에 운영되고 있다. 모든 CSA 規格開發의 政策과 指針이 결정되는 規格政策委員會는 理事會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理事會는 會員(資格은 規格活動에 관심을 갖는 個人 또는 會社機關의 모두가 갖고 있다)에 의해서 선출된다. 委員會의 구성은 Maker, User 消費者, 規制當局 科學者 및 學會의 代表, 勞動組合 代表, Consultant等에 의해서 구성되어져 있다.

CSA規格의 대부분은 從來부터 製品의 安全性을 중심으로 생각되어 왔었고, 더구나 各州의 州法에서도 反映하고 있는 것이며 規制當局의 要求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消費者의 구매 Pattern을 分析하고 소비자의 기대에도 副應해야 한다. 이들의 事情은 그 나라의 농여진 社會, 經濟的 要因에 의해서 좌우된다.

3.2 Bulletin

現行 規格에 의해서 認證을 받는 製品의 User에게 그 規格에 의해서 충분한 보호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認證을 받아야 하는 製品에 새로운 材料 혹은 Concept가 도입되어 있어도 現存 規格이 이를 材料나 Concept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가끔 1社나 2社의 Maker만이 이들 材料나 Concept를 도입한 것에 대해 이를 少數를 위해 새삼스러운 正式規格을 만들고, 改正하고 할 만큼 費用을 들일 必要가 있는가 하는 여부를 생각하면 문제는 다시금 복잡해진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특한 대책이 있다. 그것은 州와 準州의 規制當

局의 代表가 직접 활동하는 System이다. 規制當局은 安全諮問委員會로써 알려진 CSA特別諮問委員會 혹은 電氣製品規格에 대해서는 CSA 規格政策委員會로 그 代表를 보내 現在 規格을 修正하기도 하고 規格에 없는 要求事項을 결정할 必要가 생겼을 때에 關聯業界의 代表와 諮問委員會의 代表를 포함 다른 關聯단체의 代表로서 조언하고 一定한 要求水準을 定하고 있다. (이 중에는 通常 임시적으로 規格을 修正하거나 새로운 規格을 만들기 위한 委員會도 포함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要求事項이 適當하다고 보여지면 그것이 電氣製品이라면 電氣製品規格의 改善委員會(CSA 電氣要綱II部 委員會로써 알려져 있다)로 送付하여 書面投票에 붙여 그 결과가 적당하다고 보여지게 되면 그 要求事項이 "Bulletin"으로서 Maker와 關係當局 양쪽이 합의된 發效日을 明記後 發行된다. 이 제도는 그저 명색뿐인 약간 修正된 것만으로 캐나다에서 30年 以上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개 Bulletin의 發行은 2~3週間에서부터 2~3개월의 短期間 중으로 행해지고 있다.

더구나 CSA에서는 새로운 規格發行에 2年半 정도의 時間이 걸리고(이것은 ISO나 IEC의 5~7년에 비해 短縮) 기존 規格의 新版이나 規格의 一部 訂正은 더구나 短期間에 작성되고 있다.

4. CSA의 刊行物

4.1 規 格

CSA가 發行하고 있는 刊行物中 가장 중요한 것으로 CSA規格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CSA規格에는 電氣關係외에 건축재료, 車輛, 環境 보호, 건광관리, 철강, 콘크리트 등의 關係가 포함 되어 있다.

그리고 電氣安全規格은 캐나다 電氣要綱(Canada Electrical Code)으로써 刊行되었으며 4개로 되어 있다.

- Part-I 屋內 配線規定 (規格數: 2)
- Part-II 電氣器機의 安全規格 (規格數:150)
- Part-III 屋外 配線規定 (規格數: 10)
- Part-IV 鑛山(鑛山에서 사용하는 電氣) (規格數: 1)

이중 가장 一般과 關係가 깊은 것은 Part-II 規格으로써 C 22.2 NO. 0~232까지 約 200개 規格의 어느 한가지 規格으로 試驗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P. W. B, 접착 Nameplate 등은 뒤에 기술되는 “電氣 Bulletin(公報)”이나 内部規定(Laboratory Requirement) 등으로 Cover되고 있다.

4.2 電氣 Bulletin

제품은 市場의 요구에 의해서 항상 새로운 Design, 機能,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다. 規格은 이것에 따라 要求內容의 改正, 追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것을 規格의 改正으로 대처하고 있으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電氣 Bulletin”에 의해서 추가요구나, 요구사항의 變更, 삭제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편의적으로 규격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電氣 Bulletin은 새로운 改正規格이 發行된 즈음에 그 내용이 개정판에 包含되고 그것과 同時에 폐기되는 System으로 되어져 있지만 規格을 검토할 경우에 반드시 그 規格에 관련되고 있는 Bulletin도 함께 참조할 필요가 있다.

Bulletin에서는 CSA規格으로 Cover않는 製品 거의가 Cover가 되고 있을 뿐이며 一部製品은 内部規定 “Laboratory Requirement”, “P. W. B. Test Program” 등으로 Cover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일반 신청자에게 送付되지 않는다.

4.3 認證 Notice

認證 Notice(通報)는 Bulletin이 要求事項의 變更 등을 通知하는 반면, 規格의 보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CSA의 Policy 혹은 Policy의 變更, 수속방법 發表, 改正等에 대해서 通知하는 것이기 때문에 Notice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 ① CSA Label Service, 價格의 變更通知
- ② 새로운 規格, 改正規格의 發行通知
- ③ 새로운 業務, 새로운 Service 開始의 通知
- ④ 새로운 規格, Bulletin等の 새로운 요구의 義務, 發效日과 그것에 대한 조치의 지시
- ⑤ CSA Marking의 誤用, 亂用에 대한 경고
- ⑥ 신규 해외검사의 사무소의 開設
- ⑦ 工場 再檢査方法의 變更
- ⑧ CSA 認證을 받고 있는 工場에 맡겨진 出荷 檢査의 追加 또는 變更
- ⑨ 製品의 Class No의 變更
- ⑩ 新規, 改正等の 發效日 變更
- ⑪ 業務, Service의 폐지(一部品目の 認證業務 폐지等に 포함)

5. CSA規格의 分類樣式

5.1 “C”는 電氣製品

CSA規格에는 建築재료에서부터 나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제품이 Cover되고 있지만 성질이나 성능이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의 規格範圍에 包含되고 있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電氣製品에 대해서는 “C”라고 分類되어져 있다.

이 중에 C22.1과 C22.2는 國家電氣要綱(Canadian Electric Code)의 지정을 받고 있고 C22.1에 대

해서는 個個의 安全規格의 基本으로 되는 “配線規定”이 한권의 冊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C22.2의 경우는 個別規格으로써 C22.2 No. 0의 一般規定에서부터 No. 232(새로운 規格이 증가됨에 따라 변한다)까지 들어가 있다. 그 때문에 개별규격이 있어도 “1品目 1規格”으로는 되고 있지 않으며, 하나의 規格에는 많은 제품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다.

一 예를 들면 C22.2 No.68의 “Motor 응용器機”에는 Motor를 사용하는 여러가지 가정용, 상업용器機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Motor를 사용하는 모든 器機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청소기나, 세탁기처럼 個別規格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 그 밖의 규격중에 포함되어 있는 器機나 그 일부에 대해서는 NO. 68의 규격을 참조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1개의 해당規格 이외에도 반드시 제 2, 3의 關聯規格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C22.2 No.1은 Audio, Television 그 외의 電子器機等に 적용되고, 電子機器, 가정용 Tape Recorder, Amp, 가정용 電子器機에 사용되는 Adapter, Transceiver, VCR, 음향기기 및 부속품이나 部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事務機에 사용되는 Adapter에 대해서는 No. 220의 事務機의 규격이 적용되며, 一般用 Adapter의 경우에는 No. 107의 整流器에 적용되고 있다.

5.2 Class No와 Major Class No.

예를 들면 Television의 경우 2224-02, Audio의 경우는 2224-01, 가정용 Tape Recorder는 2224-01라는 數字로 CSA규격에는 個個의 제품마다 4자리의 Class No와 2자리의 派生 No가 붙여지고 있다.

여기서 첫두자리는 Major Class No를, 다음 두자리는 Minor Class No를 나타내고 있다. 앞의 예에

있는 “22”로 시작하는 Major Class No는 電子器機에 대해서 붙여진 No이며 아래 Major Class No의 List를 나타낸다.

Major Class No.

- 12: 空調 및 냉장기
- 14: 回路保護器
- 16: 청소기 및 세탁기
- 18: Conduit
- 22: 電子用器機
- 26: Gas, 石油, 石炭燃器機(電氣部分)
- 28: 熱器具
- 32: 工業用制御器機, Valve, 磁器 및 加壓스위치
- 34: 조명 Lamp
- 36: 의료, 치과용 및 연구소용器機
- 38: 여러종류의 Motor 구동器機
- 42: Motor 및 Generator
- 44: Outlet Box, 그 관련기구 및 부속기구
- 48: 경보, 시각표시 및 온도조절기구
- 52: 완 구
- 54: Transformer 및 Ballast
- 56: 용 접 기
- 57: Cable
- 58: Wire 및 Cable
- 62: 배선기구
- 64: 연료연소기구
- 66: 조립식(Prefab) 건축물 (전기部分만)
- 67: Door 조작器機
- 68: 배관용 기구 및 부속품
- 70: Pipe 및 부속품
- 72: 산업안전器機
- 74: Gas 연소器機
- 76: 플라스틱 배관제품
- 78: 자동차 및 도로안전용器機
- 79: CSA 부품 Acceptance Service

- 80: 건축용 제품 및 구조물
- 81: 조립식 건축물 및 구조물
- 82: 성능증명 및 Energuide
- 85: 그 외 제품 및 器機(기계)
- 87: 보건기술
- 90: 그 외 제품 및 기계(전기)

5.3 CSA File No.

과거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되면 LL 또는 00000-123 등으로 하는 방대한 數의 제품이나 Model의 數가 한개의 File에 넣어져 있어지만 현재는 다음과 같은 System으로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認證畢의 Model을 다른 공장에서도 생산할

경우에는 추가 공장분으로 새로운 File No가 주어지게 된다.

File No. System

- ① 제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하나의 Major Class No 마다 한개 File로 한다.
 - ② 한개 工場마다 한개 File로 한다.
- 단 CSA의 1 Major Class, 한개 工場에 대해서 한개 File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아래 사항이 있다.
- Submittor(신청자)
 - Factory(생산공장)
 - Major Class No.
 - Service Type(Label Service : LL, Re-Examination Service : LR로 표시한다)

전기용품 표시에 관한 규정 안내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1종 및 2종 전기용품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는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공업진흥청고시 제92-254호, 개정 '92. 6. 4)에 의한 표시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용품 사후관리결과 일부 전기용품의 표시사항이 동 규정에 부적합한 사례가 있어서 소비자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용품 제조 및 수입판매업체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사항을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표시위반사례 :
- 제조년월일 미표시
 - 옥내외용 구분 미표시
 - 정격소비전력 미표시
 - 한글 미표기
 - 상 미표시
 - 접지 미표시 등
- (정격전압110V초과제품)